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40 발의연월일: 2022. 3. 23.

발 의 자: 유경준 · 권명호 · 김승수

김용판・김 웅・용혜인

이 영·조명희·추경호

태영호 • 황보승희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.

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,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(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 6조의4제2호). 법률 제 호

#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 호에 따른 가상자산

제6조의4제2호 본문 중 "제4조제2항제3호"를 "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록재산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6조의4제2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 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생 략)	제4조(등록대상재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	2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
	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
	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4(변동사항 신고의 범위	제6조의4(변동사항 신고의 범위
와 내용) 제6조제1항 및 제2항	와 내용)
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	
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	
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	2.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
재산의 품목·수량·금액 등 증	
감한 변동사항. 다만, 제4조	
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	
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	
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	
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	
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	

아니한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